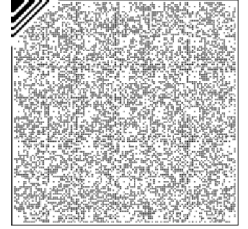




# 경북지방노동위원회



수신 경상북도를 원청으로 두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귀하  
(경유)

제목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요청

---

1. 항상 노동업무에 적극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2. 2026. 3. 10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가 '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로 본다'라고 개정되었습니다.
3. 이에 공공&돌봄노동조합이 2026. 3. 10. 경상북도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(경북2026단위4)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경상북도가 원청 또는 위탁업체인 하청 또는 수탁업체 노동조합은 위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**2026. 3. 27.(금)**까지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(전화: 053-667-6528, 이메일: nodongbu10@korea.kr)에게 연락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체적 신청내용 및 의견서 양식은 개별적 통지에정 끝.

경북지방노동위원회



주무관

2026. 3. 16.

이연이

협조자

시행 심판과-3852

(2026. 3. 16.)

접수

우 42140

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, 경북지방노동위원회

/ <http://gyeongbuk.nlrc.go.kr>

전화번호 053-667-6528

팩스번호 053-767-6539

/ [nodongbu10@korea.kr](mailto:nodongbu10@korea.kr)

/ 비공개(6)